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26. 4. 15.(수)



행정복지위원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11호
- 제출 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6. 4. 9.)

2. 제안사유

- 손해배상 시 지자체장의 면책 특례 규정은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혼선 우려가 있고, 사용료 미반환 원칙 또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 하고자 함. 이에 「민법」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중복과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관련 별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안 제14조)

- 종전 사용료 반환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규정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현행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실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관련 별표를 정비(안 별표)

4. 관계법령

- 「민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의 경우 종전의 제한적이었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수리·교환·환급·배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자체장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안 제14조제1항)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을 통해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함입니다.
- 아울러 현행 운영 실태와 반영하여 체육관 등 주요 시설의 사용료 기준표(별표 2)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 최근 관내 공공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환불 분쟁 (제322회 정례회 안건: 사문진피크닉장 환불 절차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12호
- 제출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6. 4. 9.)

2. 제안사유

- 상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선도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운영·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제31조를 근거로, 지역 내 유해업소 밀집 구역 등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통제와 선도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과거 인근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성매매 집결지였던 일명 '자갈마당' 일대 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99년 제정하여 장기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레드존)으로 지정·운영하다가 재개발에 맞춰 2019년 해제한 실사례가 있으며, 현재도 다수 지자체가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 해당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정 기준에 따라 '통행금지구역(24시간 금지)'과 '통행제한구역(오후 7시~다음 날 오전 6시)'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구역 지정 및 해제 시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행정의 민주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입니다.
-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권 위축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발이나 낙인효과(Stigm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근 지자체의 사례로 기억되는 유해환경뿐만 아닌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명기된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한 지정기준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구역이 지역 낙인이 아닌 지역 안전과 치안을 확보하는 제도로 인식하게끔 하는 인식의 전환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조례 제정 이후 단순히 표지판 설치(안 제7조)에 그친다면 실질적 주민체감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조례 시행 후 실제 구역 지정 시, 관할 경찰서 및 시민단체와의 합동 단속 시스템(안 제9조)을 내실 있게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13호
- 제출 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6. 4. 9.)

2. 제안사유

- 군민독서실 폐관 및 향후 별도의 운영 계획이 없음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근거인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별도의 실효성이 없음에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4. 관계법령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달성군 군민독서실이 2022년 폐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군민독서실은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을 이바지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에서 운영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 휴관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청사 내 시설 유지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대두되었고,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공간 및 시설혁신)에 의거하여 폐쇄적 독서실 형태에서 화원읍 작은도서관으로 확대 이전한 바 있습니다.
- 자치법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범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사무가 소멸하여 향후 운영 계획이 없을 경우, 조례를 존치시키는 것은 자치법규 체계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 따라서 법적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본 폐지 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14호
- 제출 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6. 4. 9.)

2. 제안사유

- 저출산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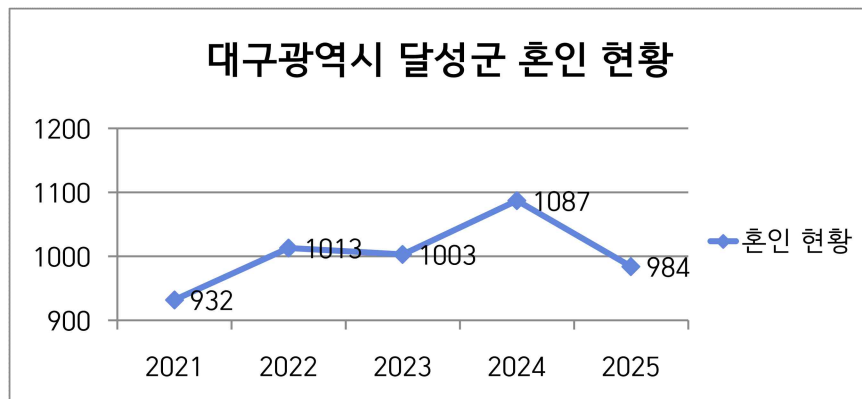
- 신혼부부 저축 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칭 지원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저축기간 · 신청절차 · 사후관리 및 환수 등 세부사항 준수 위임 규정 신설(안 제3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4.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달성군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가 일정 기간 저축을 유지할 경우 군에서 동일한 금액(1:1 비율)을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근거(안 제3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간한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보고서_2025년』에 따르면 혼인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를 손꼽고 있습니다. 이에 혼인 초기 신혼부부의 종잣돈 마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본 정책은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청년층 이탈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시책으로 평가됩니다.
-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매칭 지원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신혼부부’에 특화하여 연간 약 24억 원(1,000쌍 기준)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달성군만의 결혼 장려 특화사업으로 선제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계서비스(26. 3. 25. 기준)

- 다만, 막대한 세금이 매년 투입되는 예산 수반 사업이므로, 향후 규칙 제정 및 사업 실행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나 대구시 단위에서 시행 중인 기타 자산형성 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약정 기간 내 타 지역 전출, 이혼, 저축 중단 등 변수 발생 시의 명확한 환수 기준과 사후관리 규정을 설계하여 오·부정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15호
- 제 출 일: 2026년 3월 2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6. 4. 9.)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를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하고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변경사항('17.3.21. 일부개정)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조항 추가(안 제3조)
- 상위 법률 변경 사항 반영(안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격 요건 추가

4.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최근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통합지원(의료·요양 등)’ 체계 구축에 발맞추어, 새로 신설해야 할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자문 기능을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하여 수행(안 제3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지원을 위해 지자체마다 협의체를 두되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 제3조제7호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 또한, 읍·면 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가 읍·면 단위 복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군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포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시킨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충실히 반영한 적법한 조치입니다.
-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정부부처에서 추진한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위원회 통·폐합 사항과 부합하며, 지역 복지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